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69
----------	-------

발의연월일 : 2026. 5. 27.

발 의 자 : 이정현 · 이훈기 · 이주희  
김 현 · 허성무 · 박홍배  
강준현 · 박선원 · 김병주  
김우영 · 손명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을 위하여 사업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제도는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공공 행정망 장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장애 발생 시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큰 대형 사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역량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인정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공공 행정망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1호 후단 중 “의뢰하여”를 “의뢰하여 발주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전단 중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 “제3항제2호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으로,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를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평가를 거쳐 예외사업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의 범위,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①·② (생략)</p> <p>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 전 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인 대기업만 해당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p> <p>1.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u>의뢰하여</u> 발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2. ~ 5. (생략)</p> <p>④ <u>국가기관등의 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u></p>	<p>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1. ----- -----. ----- ----- - <u>의뢰하여 발주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u> ---.</p> <p>2. ~ 5.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시킬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  
----- 제3항제2호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  
----- . <후단 삭제>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평가를 거쳐 예외사업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

한,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  
외사업의 범위,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